

감사보고서

송원대학 총장

송원대학 산학협력단장 귀하

본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6조에 의하여 송원대학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연도 정관상의 예·결산자문위원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09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본인의 의견으로는 송원대학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 정관상의 예·결산자문위원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재표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2009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09년 5월 12일

공인회계사

정홍길

